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[정재동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637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정재동 의원

찬 성 자 : 장규권 의원

1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의도치 않은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·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나.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다. 보험료 납부, 보장내용,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~제7조).

라.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, 제27조 등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·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발달장애인"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2. "보험"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- 3. "보호자"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제3조(보험 가입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- 제4조(보험회사의 선정)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「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제5조(보험료 납부)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 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.
- 제6조(보험의 보장내용 등)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·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.
 - 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, 보험료, 보장금액,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7조(보험금 청구 등)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 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. 다 만,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 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8조(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・군・구로 전출한 경우

- 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
- 3.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[시행 2024. 6. 14.] [법률 제20095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<u>"발달장애인"이란</u>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- 가. <u>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</u> <u>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</u> <u>당히 곤란한 사람</u>
- 나. <u>자폐성장애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· 신체표현 · 자기조절 ·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</u>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- 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- 2. "보호자"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- 나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- 다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 하는 사람
- 라.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- 제8조(자기결정권의 보장) ① <u>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, 의료행위에</u> 대한 동의나 거부, 타인과의 교류,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.
-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7조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 장애인이 영화, 전시관, 박물관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 사 등을 관람·참여·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, 놀이기구,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(소득보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